

『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7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7월 15일

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05년 1월 26일

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가로수 및 녹지시설은 푸른 녹음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녹지를 형성하고 도시경관조성, 공해방지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와 녹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 변상금 규정 설정(제14,15조)
 - 피해 변상금의 강제징수 명문화
-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(제7조)
 - 물 주기, 병해충발생신고 등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권장.

라. 참고사항

- 도로법 제3조, 제64조, 제67조, 제78조
- 도시공원법 제16조, 제18조
-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녹지시설관리에 대한 시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녹지시설의 관리 및 녹화 지원기준, 시민 참여, 위탁관리,
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
관한 사항 등이며,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
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